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

[김보경 의원 대표발의]

의 번	안 호	2250
--------	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27.

발의의원 : 김보경 의원,
신달호 의원, 박영동 의원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관학협력 시 원칙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관학협력의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관학협력 관련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5~6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,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·제18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교육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나.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가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2. “관학협력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관내 교육기관과 상호협력하여 교육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관학협력 시 원칙) ① 관학협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진·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계획의 공동 수립, 공동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군수와 관학협력 관내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학협력 사항을 정한 경우 그 사항의 내용, 추진 방법·절차 등을 규정한 문서를 작성·교환 후 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학협력의 대상)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

2. 지역의 경제·문화·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
3.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·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
4. 미래의 주역인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개발·추진
5. 그 밖에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

제5조(예산의 지원 등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교육기관의 장과 관학협력 대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,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르거나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사후관리 및 평가 등) ①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관학협력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, 상호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후 관학협력 사업을 취소 또는 중지·중단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·손실에 대하여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^(발췌)

☐ 「고등교육법(법률)」 [2022.10.18. 일부 개정·시행]
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대학
2. 산업대학
3. 교육대학
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“원격대학”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
7. 각종학교

☐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(법률)」 [2022.2.3. 타법개정, 2022.8.4. 시행]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

제18조(지방대학의 책무)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·연구 환경을 조성하고,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·복지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·학·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.